께雌ℳ노랑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.X)

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

2회 (1/14)

- 1. 국토계획법 시행령상의 건폐율 기준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, 제1종 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동일하다. ()
- 2. 유통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은 동일하다. ()
- 3.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동일하다. ()
- 4. 용적률이란 건축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이다. ()
- 5.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300%이다. ()
- 6.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된 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1.100%이다. ()
- 7.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된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동일하다. ()
- 8. 용적률(시행령)의 상한 기준을 가장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배열한다면 일반상업 지역 → 준주거지역 → 근린상업지역 → 계획관리지역 → 준공업지역의 순서로 배열이 가능하다. ()
- 9.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다. ()
- 10.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, 행위제한,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다. ()
- 11. 시가화조정구역의 유보기간은 20년 이내로 정한다. ()
- 12.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·군관리계 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 ()
- 13.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도시·군계획사업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. ()
- 14.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농업용 창고·축사 등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 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. ()
- 15.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공익시설·공용시설 및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. ()

16.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만 지정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 하다. ()

매일정리노트(O, X) 정답

- **1. (X)** 제1종 전용주거지역⇒50%, 제1종 일반주거지역 ⇒ 60%, 준주거지역 ⇒ 70% 이하이다.
- **2. (X)** 유통상업지역⇒80%, 준공업지역⇒70% 이하이다.
- **3. (X)** 보전관리지역⇒20%, 계획관리지역⇒40% 이하이다.
- 4. (X)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이다.
- **5. (X)** 250% 이하이다.
- 6. (X) 900% 이하이다.
- **7. (X)** 준주거지역⇒500%, 준공업지역⇒400% 이하이다.
- 8. (X) 일반상업지역(1,300%) → 근린상업지역(900%) → 준주거지역(500%) → 준공업지역(400%이하) → 계획관리지역 (100%)

[건폐율 / 용적률 암기하는 방법]

	スナ	전	1 2 1	50,100 50,150 60,200	<u>건폐율</u> : 오오육육오~칠구팔팔칠 칠칠칠. 이이이 이이사 이이 용적률: 백부터 50씩 4번더하고, 준주거지역5글자500, 오삼일구, 300+50두번 더하고 나머지80,				
되		일	2	60,250	생산녹지,자연녹지, 계획관리만 100~~~				
			3	50,300					
		준		70,500	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(대지에 건축물이 2 이상 있				
	상	중		90,1500	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)의 비율(이 				
		일		80,1300	하 "선폐율"이라 앤네)의 최내인도는 '국도의 계획 및				
		유		80,1100	기 전폐율 = 건축면적 × 100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. 다				
		근		70 ,900	에 보이는 보호하다 기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				
	면	전		70, 300	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(556657, 9887, 777,				
		일		70, 350	222,224,22)				
		준		70, 400	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(대지에 건축물이 2 이상 있는				
	녹	보		20 , 80	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)의 비율(이하 "용				
		생		20 ,100	용적률 적률"이라 한다)의 최대한도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				
		자		20 ,100					
관리	보	<u>보</u> 생		20, 80	U				
				20, 80					
	계			40, 100	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(100부터 50씩4번, 준주거500,				
농림				20, 80	중심상업 1500에서 200씩 빼고, 공업지역 300에서				
자보				20, 80	50씩, 이하 80이나 생산녹지,자연녹지,계획관리만 100)				



께쌛♥ 노량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,X)

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

2회 (1/14)

★ 핵 심 정 리 ★ [용도지역 등의 지정 및 결정고시 특례											
지정	1) 공유수면매립	(1) 매립목적 = 인접용도지역의 내용			매립준공인가일에 인접한 용도지역과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지정의제 <> 고시는 해이함!						
특례	(바다에 한함)	(2) 매립목적 # 인접용도지역 or 2이상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 웃하고 있는 경우			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절차에 의해 지정						
결장 고시 특례		① 어촌어항법 : 어항구역 ② 항만법 : 항만구역		시지역 연접시	"항상 도시지역연접"표현이 있어야함!						
	1)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	③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④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(농공단지는 제외) ⑤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시업구역 및 예정구역(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시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)									
	2) 관리지역	(1)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				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					
	안에서	(2)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구분하는 바		구분하는 바 ⇨		농림지역 or 자연환경보전 결정고시 간주					

- 9. (X)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. 시가 화조정구역에 대한 설명이다.
- 10. (X) 따로 법률인 "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"으로 정한다.
- **11. (X)**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결정할 수 있다.
- 12. (X) 시가화조정구역은 시·도지사가 지정한다. 단,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·군관리계 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- 13. (X)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에 한하여 시행이 가능하다.
- 14. (X)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다.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신고사항은 없다.
- 15. (X) 허가를 받고 하여야 한다(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우는 없다).
- 16. (X)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만 지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.